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081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 우재준 · 김소희 · 서천호

이성권 • 박충권 • 김장겸

김선교 · 김정재 · 김위상

권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대학은 그간 기업의 현장 수요에 맞춰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국민의 고용촉진, 기 업의 생산성 향상 등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음.

근래 제조기업들이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국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증가하여 제조기업들의 해외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기능대학의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능대학의 해외 분교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능대학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능대학의 중요사항 변경 인가 권한을 부여하여 기능대학의 해외 분교 설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제조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함(안 제39조의2신설 등).

법률 제 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는 자는 기능대학을 폐지하거나 기능 대학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기능대학 분교의 설치) ①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기능대학 분교의 설치·경영 인가, 설립기준, 폐지 및 중요사항 변경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이 경우 "기능대학"은 "기능대학 분교"로 본다.

제5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39조제5항에 따른 기능대학(국가가 설립한 기능 대학은 제외한다)의 중요 사항 변경 인가에 관한 권한(제39조의2제2 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u> </u>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
			는 자는 기능대학을 폐지하거
			<u>나 기능대학의 명칭 및 위치</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u>한다</u> .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u><신 설></u>			제39조의2(기능대학 분교의 설치)
			①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
			<u>치할 수 있다.</u>
			② 기능대학 분교의 설치・경
			영 인가, 설립기준, 폐지 및 중
			요사항 변경 인가 등에 관하여
			는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능대학"은 "기능대학 분교"
			<u>로 본다.</u>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두 등)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교육부장관은 제39조제5항
	에 따른 기능대학(국가가 설립
	한 기능대학은 제외한다)의 중
	요 사항 변경 인가에 관한 권
	한(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②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